



Tax in Motion

새로운 인센티브 프레임워크



새로운 인센티브 프레임워크

말레이시아의 신인센티브프레임워크(NIF)는 국가의 투자 인센티브 제도에 대한 중대한 개혁을 의미합니다. 2025년 예산안에서 처음 소개된 이 법안은 1986년 투자촉진법(PIA 1986)에 따른 전통적인 '우대 업종/활동 목록 방식'을 대체하기 위한 '등급별 성과 기반 접근' 방식을 채택합니다.

NIF는 국가투자비전(National Investment Aspirations, NIA)을 기반으로 하며, 2030년 신산업마스터플랜(NIMP)과 연계되어 인센티브가 측정 가능하고 전략적인 경제 성과를 지원하도록 보장합니다.

NIF는 2026년 3월 1일부터 제조업 부문을 시작으로, 2026년 2 분기에는 서비스 부문으로 단계적으로 시행됩니다.

NIF에 따른 인센티브는 1967년 소득세법의 조항을 통해 부여됩니다. 이 전환에 따라 PIA 1986 하의 새로운 세금 인센티브 신청은 2026년 2월 28일 (오후 3시) 이후에는 더 이상 접수 받지 않게 되어, PIA 1986하의 신규 신청은 사실상 단계적으로 폐지되고, 기존 승인된 인센티브만 유지됩니다.

제조업에 대한 NIF 세금 인센티브 지침과 관련 FAQ가 발표되었습니다(miti.gov.my/NIF). 주요 내용은 동 Tax in Motion 호에 요약되어 있습니다.



고부가가치
투자



지속 가능한
균형잡힌
경제 성장

사전 충족 요건*

- ✓ 직원 1인당 자본 투자액
- ✓ 4차산업 기반 자동화 도입
- ✓ ESG 실천
- ✓ 말레이시아 국적 근로자 비율 80%

* 섹터별 상세 내용 12페이지 참조


국가투자비전 목표

- 1 경제 복잡성 제고
- 2 고부가가치 일자리 창출
- 3 국내 연계 강화
- 4 신규 및 기존 경제 클러스터 육성
- 5 포용성 제고
- 6 ESG* 실천 강화

* 환경, 사회 및 지배구조

성과 기반 접근법으로의 전환 - 예시

NIF에서는 생산 기반 접근법에서 성과 기반 접근법으로 초점이 전환됩니다. 회사는 다음 상호 배타적인 인센티브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으며, 각 인센티브는 정해진 요건 충족에 따라 등급별 구조로 제공되어 서로 다른 세율과 혜택이 적용됩니다. 아래는 이에 대한 예시입니다:

특별 세율 또는		ITA (투자세액공제)		요건 	
1단계	5% 5년 동안	100% 최대 5년	법정소득 100% 상계 가능	추가 요건과 최소 요건 모두 충족 필요	기업의 성과는 인센티브 기간 동안 NIA의 6대 목표에 대한 NIA 스코어카드 지표를 기준으로 평가되며, 이를 통해 NIF 인센티브 요건 충족 여부를 결정
2단계	10% 5년 동안	60% 최대 5년	법정소득 70% 상계 가능	최소 요건만 충족 필요	

제조업 부문 성과 기반 인센티브

새로운 인센티브 프레임워크 하의 제조업 신규 투자에 대한 세금 인센티브 지침에 따른 인센티브 제도는 다음과 같습니다:

특별 세율*	또는	ITA (투자세액공제)	투자 유형
0% - 10% 최대 15년		100% 최대 15년 법정소득 70%~100% 상계 가능	신규 투자
0% - 15% 최대 15년		100% 최대 15년 법정소득 70%~100% 상계 가능	저개발 지역 투자
3% - 12% 최대 15년		100% 최대 15년 법정소득 70%~100% 상계 가능	소규모 기업



소규모 기업 요건

- 주주 자본금 RM500,000 이하
그리고 말레이시아 지분 60% 이상
- 또는
- 주주 자본금 RM500,000 이상 RM2.5백만
이하 그리고 말레이시아 지분 100%
- 그리고
- ✗ 모회사 또는 특수관계기업이
직·간접적으로 20% 이상 지분 보유,
그리고 모회사/특수관계기업의 주주
자본금이 RM500,000 또는 RM2.5백만
초과

*손실은 최대 7년간 이월 가능하며, 인센티브 적용 후 소득에서 공제할 수 있음

NIA 스코어카드 평가 – 제조업 부문

1

경제 복잡성 제고

- Harvard Growth Lab의 경제복잡성 아틀라스에 따른 제품 복잡성 지수
- 매출 대비 연구개발(R&D) 비용 비중, R&D가 신규성 또는 기술적 위험을 포함하는 경우
- 현대 기술 활용 수준
- 4차 산업혁명 기술 도입

자세한 내용은 14-18쪽 참조

2

고부가가치 일자리 창출

- 전문대·학사 이상 학위 또는 기술자격을 보유한 고숙련 근로자의 비율
- 근로자 1인당 연간 임금 중앙값
- 수당 및 초과근무를 제외하고 월 RM10,000 이상을 받는 근로자의 비율
- 관리·기술·감독 직군에 종사하는 말레이시아 국적 근로자의 비율

자세한 내용은 14-18쪽 참조

NIA 스코어카드 평가 – 제조업 부문

3

국내 연계 강화

- 연간 현지 조달 비중(원자재/부품 기준)
- 총 급여 대비 교육·훈련비 비율
- 국내 학계 및 산업계와의 협력(예: 교육, R&D, R&D 사업화, 직원 전문성 개발, 기술 이전 / 대학 인큐베이터 등)
- 공급업체 개발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벤더 수
- 말레이시아 내에서 현금풀링 또는 자금관리 활동을 수행할 지역/글로벌 재무·금융센터를 하나 이상 설립

자세한 내용은 14-18쪽 참조

4

신규 및 기존 산업 클러스터 개발

- 제품이 특허를 취득했거나 특허 출원 진행 중일 것
- 제품이 NIA 목표 분야 또는 NIMP 2030 핵심 분야에 해당할 것
- 공공·민간 고등교육기관 또는 공공 연구기관의 R&D 성과를 사업화할 것

자세한 내용은 14-18쪽 참조

NIA 스코어카드 평가 – 제조업 부문

5

포용성 제고

- 인턴십 또는 견습 프로그램 운영, 또는 경력 3년 미만의 대학생·졸업예정자 고용
- 최고경영진 내 여성 비율
- 취약계층 근로자 비율 (예: 고령자, 장애인, 전과자, 약물중독 회복자 등)
- 말레이시아 국적 근로자 비율

자세한 내용은 14-18쪽 참조

6

ESG 실천 강화

- 지속가능한 관행 (예: 재생 가능한 소재·포장 사용, 재활용 소재 도입, 순환경제 공정 적용)
- 지속가능한 폐기물 관리 (예: 폐수 처리, 폐기물 최소화)
- 지속가능한 물 소비 (예: 물 사용량을 줄이는 고효율 공정 적용)
- 지속가능한 에너지 소비 (예: 잔여 폐기물 기반 재생에너지, 태양광 에너지 활용)

자세한 내용은 14-18쪽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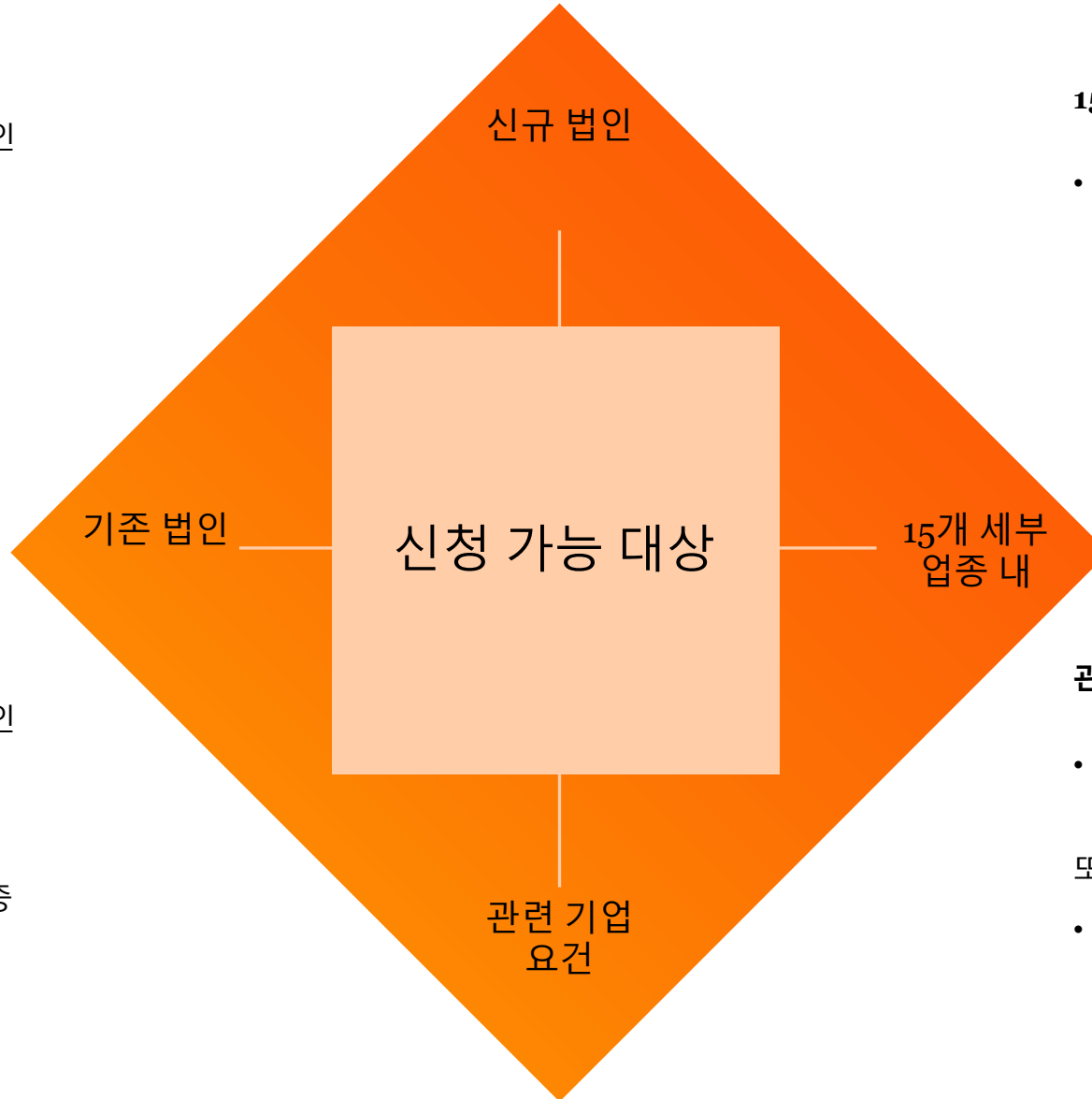
신청 자격 요건 – 제조업 부문

신규 법인

- 말레이시아에 설립된 거주(resident) 법인
- 신설 법인이거나 아직 상업적 영업을 개시하지 않은 법인
- 인센티브 기간 동안 유효한 제조업 라이선스를 보유
- 관련된 기업 요건을 충족
- 해당 업종별(섹터별) 요건을 충족 (세부 내용: 12쪽)

기존 법인

- 말레이시아에 설립된 거주(resident) 법인
- 이미 말레이시아에서 영업 중인 법인
- 인센티브 기간 동안 유효한 제조업 라이선스를 보유
- 말레이시아에서 다른 프로젝트를 수행 중
- 해당 업종별(섹터별) 요건을 충족 (세부 내용: 12쪽)



15개 세부 업종 내

- 바이오기술 기반 제품 또는 재활용 제품을 생산하는 기업도 15개 세부 업종 내에서 신청 가능

관련 기업 조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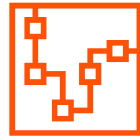
- 신청 이전에 말레이시아 내 관련 기업이 없어야 함
- 또는
- 말레이시아 내 관련 기업이 있더라도, 해당 관련 기업이 말레이시아에서 다른 프로젝트를 수행 중일 것

NIMP 2030의 대상(적격) 세부 업종

15개 세부 업종



항공우주



전기 및 전자*



목재, 제지* 및 가구



화학 및 화학 제품*



제약*



고무 기반 제품*



자동차



의료기기



전략적 광물 기반 제품*



기계 및 장비



금속*



석유 제품* 및 석유화학



식품 생산 및 가공*



올레오케미컬과 그 유도체



섬유, 의류 및 신발

*일부 제외 업종 있음. 13페이지 참조

출처: NIMP 2030

글로벌 최저한세 및 기타 인센티브와의 연계

글로벌 최저한세(GMT)

GMT 규정에 따라, 말레이시아 내 적용 대상 다국적기업(MNE)의 유효세율(ETR)이 15% 미만인 경우, ETR을 15%로 맞추기 위해 추가세금을 부과해야 합니다.

GMT 규정 적용 대상 범위 내에 있는 기업(신청인)은 NIF 하에서 인센티브를 평가할 때, 이익 및 자본적 지출 전망을 고려해야 합니다.

OECD는 최근 Side-by-Side 패키지 하에 실질적인 세제 인센티브를 적용할 수 있도록 하는 실질 기반 세금 인센티브 세이프 하버를 발표했으며, 이를 통해 실제 실질과 연계된 적격 세제 인센티브를 적용하여 ETR 희석을 완화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MNE 그룹의 연결재무제표 기준 연간 매출이 7억 5천만 유로(EUR 750 million) 이상이며, 직전 4개 회계연도 중 최소 2개 연도에서 해당 기준을 충족하는 MNE 그룹

기타 인센티브와의 연계

기존 인센티브	NIF와의 연계
재투자 공제	상호 배타적(중복 적용 불가)
PIA 1986 인센티브	2026년 2월 28일 이후 신규 신청 불가 기존 승인 건은 유효
PIA 1986 외 기타 인센티브(JSSEZ, 디지털 생태계 가속화 제도, 글로벌 서비스 허브 등)	신청 기간 만료 시까지 계속 이용 가능
기존 승인된 인센티브	변경 없이 유지
진행 중인 기존 신청 건	(사업/운영을 아직 개시하지 않은 경우) NIF로 전환 가능 신규 신청서 제출 필요
기존 인센티브를 보유한 기업	NIF 신청 가능하나, 다른(별도의) 프로젝트에 한함

신청 및 모니터링 절차

1

상담 및 사전 신청

기업은 MIDA와의 상담을 통해 해당 프로젝트가 NIF와 부합하는지 확인하고, 신청 자격 및 요건을 파악합니다.

2

MIDA 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신청서 제출

신청서는 MIDA의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제출합니다. 신청서는 제안된 제품/활동의 운영 개시 전에 제출해야 합니다.

3

NIA 스코어카드에 따른 평가

MIDA는 NIA 스코어카드를 활용해 프로젝트의 국가 목표 기여도를 평가하고, 인센티브 등급(Tier)을 결정합니다.

4

사전 승인서 및 조건 발급

승인 시 MIDA는 승인된 세제 인센티브, 등급(Tier), 그리고 인센티브 기간 동안 기업이 충족해야 할 최소 요건 및 추가 요건을 명시한 사전 승인서(approval-in-principle)를 발급합니다.

5

준수 및 모니터링

승인서에 명시된 조건은 매년 기준으로 준수되어야 합니다. 기업은 인센티브 기간 동안 매년 연차 준수 보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부록 I: 제조업 부문에 신규 투자를 수행하는 신규 또는 기존 기업

[가이드라인 발췌]

제조업 활동을 수행하는 기업은 아래의 일반 기준과 업종별 요건(해당되는 경우)을 충족해야 합니다.

일반 기준	<p>제조 라이선스(ML) 참고: ML 요건은 IC 설계 및 테스트 활동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납입자본금이 RM2.5백만 초과하지 않고, 유급 정규직 직원 수가 75명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 제조업 라이선스 면제를 위한 확인서(ICA 10 서한)를 제출하거나 보유해야 합니다.</p>	<p>기업은 인센티브 신청 이전에 ML을 신청·보유해야 하며, 인센티브 기간 동안 ML은 유효하게 유지되어야 합니다.</p>
주요 업종별 요건 (사전 요건)	<p>직원 1인당 자본투자액(CIPE) RM140,000 참고: CIPE는 자본투자액(토지 및 건물에 대한 10년치 임대료를 포함한 고정자산 투자액)을 정규직 직원 총수로 나누어 산정합니다.</p>	<p>다음 업종은 CIPE RM140,000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석유화학 제품 • 올레오케미컬과 그 파생물 • 식품 생산 및 가공 • 목재, 제지 및 가구 • 섬유, 의류 및 신발 • 전략 광물 기반 제품 • 고무 기반 제품 • 금속
제조 공정에서 자동화/IR4.0 또는 스마트 애플리케이션/시스템 도입	<p>다음 세부 업종은 제조 공정에서 자동화/4차 산업 또는 스마트 애플리케이션/시스템 도입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석유화학 제품 • 식품 생산 및 가공 • 올레오케미컬과 그 유도체 • 목재, 제지 및 가구 • 섬유, 의류 및 신발 • 고무 기반 제품 • 금속 	
지속 가능성 실천	<p>다음 업종은 폐기물 관리, 지속가능한 원재료, 물 사용, 에너지 사용과 관련하여 지속가능한 운영 관행을 갖추어야 합니다.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석유화학 제품 • 올레오케미컬과 그 유도체 • 목재, 제지 및 가구 • 섬유, 의류 및 신발 • 전략 광물 기반 제품 • 고무 기반 제품 • 금속 	
인력 요건 참고: 말레이시아인 근로자(Malaysian workers)는 말레이시아 국적을 보유한 근로자를 의미합니다.	<p>다음 세부 업종은 전체 인력 중 말레이시아 국적 근로자 비율이 최소 80% 이상이어야 합니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목재, 제지 및 가구 • 섬유, 의류 및 신발 • 전략 광물 기반 제품 • 고무 기반 제품 • 금속 	
연간 총매출의 최소 1% 이상에 해당하는 설계·개발 지출	목재 및 가구	

부록 I: 제조업 부문에 신규 투자를 수행하는 신규 또는 기존 기업

[가이드라인 발췌]

제외 사항: 아래 제품/활동은 인센티브 대상 활동 범위에서 제외됩니다.

제품 및 활동 유형	하위 부문
1. 혼합 및 블렌딩 활동	화학 및 화학 제품
2. 충전 및 마감(Fill & Finish) 활동	제약
3. 장갑 제품 및 승용차 타이어	고무 기반 제품
4. 업스트림 분야(예: 채굴·채석)	전략 광물 기반 제품
5. 모든 종류의 제지 제품 참고: 제지 제품의 제외 규정은 보안용지에는 적용되지 않으며, 기업은 폐원료를 수입할 수 없습니다.	제지
6. 모든 석유 제품 참고: 석유제품 제외 규정은 아래의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RAPID(Refinery and Petrochemical Integrated Development Project) 단지 내에서 생산되는 석유제품 • 석유화학 제품 생산도 포함하는 통합 프로젝트 두 범주 모두 인센티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석유 제품
7. 주류	식품 생산 및 가공
8. 전자담배 및 베이프류 제품	전기 및 전자
9. 무기 및 탄약	금속

부록 II: NIA 스코어카드 – 제조업 부문

[가이드라인 발췌]

영역	지표	설명
1. 경제 복잡성 제고	A. 제품 복잡성 (지수)	Harvard Growth Lab의 Atlas of Economic Complexity 지수 참조
	B. 연구개발 지출의 매출 대비 비율*	<ul style="list-style-type: none"> 연구개발(R&D)은 과학 또는 기술 분야에서 새로운 지식을 획득하거나, 연구 결과를 제품·소재·장비·공정·서비스의 생산 또는 개선에 활용하기 위해 수행되는 체계적·조사적·실험적 연구를 의미하며, 다음을 포함하지 않습니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a) 재료, 장치 또는 제품의 품질 관리 또는 일상 시험 b) 사회과학·인문학 분야 연구 c) 일상적 데이터 수집 d) 효율성 조사 또는 경영 조사 e) 시장 조사 또는 판매 촉진 f) 재료·제품·공정 또는 생산 방식에 대한 단순한 변경 g) 재료·제품·공정 또는 생산 방식에 대한 미적·기능적·스타일 변경 R&D 지출은 말레이시아 소득세법 제34A조에 따른 지출을 의미하며, 다음을 포함합니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a) 연구에 사용되는 원자재 b) 기술 서비스 비용 c) 여행 및 교통비 d) 연구 인력의 급여 및 수당 e) 연구 건물 및 장비의 유지보수 비용, f) 연구에 사용되는 장비, 기계 또는 건물의 대여.
	*매출은 회사의 총매출을 의미	
	C. 기술 수준	<p>기술 수준은 다음을 의미합니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완전 자동 기계/장비, 또는 반자동 기계/장비, 또는 수동
D. 4차 산업혁명 기술 도입 요건 충족	4차 산업혁명 기술 도입은 빅데이터 분석, 클라우드 컴퓨팅, 증강현실, 사이버보안, 인공지능, 적층제조, 시스템 통합, 시뮬레이션, 사물인터넷(IoT), 자율형 로봇, 첨단소재를 의미합니다.	

부록 II: NIA 스코어카드 – 제조업 부문

[가이드라인 발췌]

영역	지표	설명
2. 고부가가치 일자리 창출	A. 전문대(디플로마)·학사 이상 학위 또는 기술자격 보유 고숙련 근로자 비율	전문대(디플로마)·학사 이상 학위 또는 기술자격을 보유한 근로자 수
	B. 근로자 1인당 연간 임금 중앙값	근로자 1인당 임금 중앙값은 회사에서 지급된 모든 임금의 중앙값(가운데 값)
	C. RM10,000 이상 소득 근로자 비율	근로자의 수당 및 초과근무 수당을 제외한 기본급 기준 RM10,000
	D. 전체 관리·기술·감독(MTS) 고용 직군 중 말레이시아 국적 근로자 비율	MTS는 관리(Managerial), 기술(Technical), 감독(Supervisory) 직군의 근로자를 의미 참고: 말레이시아인 근로자(Malaysian workers)는 말레이시아 국적을 보유한 근로자를 의미
3. 국내 연계 강화	A. 연간 현지 투입요소 비율	현지 투입요소(local input)는 제조 공정에 사용되는 원자재/부품만을 의미 제조 활동에 사용되는 기계 및 장비는 제외
	B. 총 급여 대비 교육·훈련비 지출 비율	회사의 총 급여 대비 교육·훈련비 지출 비율.
	C. 국내 학계 및 산업계와의 협력	협력 유형: a) 교육 – 학계와 산업계 간 파트너십을 통해 학습 프로그램을 지원(예: 커리큘럼 공동 개발, 자원 공유 등). 다만, 인턴십 프로그램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b) 연구개발 – 고등교육기관/연구기관과 산업계 간 공동 연구(협력연구센터(CRCs) 포함) c) 사업화 – R&D 결과를 시장성 있는 제품, 서비스, 라이선스로 전환하고 상업적으로 활용 d) 직원 전문성 개발 – 학계 및 산업 전문가가 회사 직원에게 제공하는 평생학습 e) 기술이전조직(TTOs), 대학 인큐베이터(UIs) – 대학과 산업계 간 지식 교류 및 공동 연구 협력을 촉진

부록 II: NIA 스코어카드 – 제조업 부문

[가이드라인 발췌]

영역	지표	설명
3. 국내 연계 강화	D. 벤더 개발 프로그램 참여(벤더 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다국적기업(MNC) 및 현지 대기업(LLC)(앵커 기업)이 현지 조달 활동을 확대하고, 산업 생태계의 격차를 완화하기 위해 국내 기업에 더 많은 기회를 제공하도록 장려하는 프로그램. • 벤더 개발 프로그램(VDP)의 활동에는 다음이 포함됩니다: <ol style="list-style-type: none"> a) 인적자원 관련 활동(하드 스킬 교육 또는 역량 고도화) 및 현지 벤더 인증을 위한 공장 심사 등 b) 제품 개발 관련 활동(제품 품질 고도화 및 제품 혁신) c) 기술 협력 또는 기술 지원 활동
	E. 말레이시아에서 현금 풀링 활동을 수행하는 지역 및/또는 글로벌 재무 및/또는 금융센터를 설립	현금풀링 또는 자금관리 활동은 말레이시아 내 온쇼어(onshore) 중개기관을 통해 수행되어야 합니다. 명확히 하기 위해, 말레이시아에서 명목상 또는 장부기록 방식으로만 수행되는 현금풀링 또는 자금관리 활동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회사가 제공한 서비스에 대해 해외 관계사 또는 자회사로부터 수수료를 받는 경우, 해당 대가/수익은 말레이시아로 송금되어야 합니다
4. 신규 및 기존 산업 클러스터 개발	A. 생산 제품이 특허를 보유하고 있거나 특허 출원 진행 중	회사는 말레이시아 내/외에서 특허를 개발/출원/등록
	B. 해당 제품이 국가 투자 비전(NIA)의 목표(대상) 분야 또는 신산업 마스터플랜 2030(NIMP 2030)의 핵심 분야에 해당	가이드라인 3.5에 열거된 대상 분야
	C. 국내 기관의 R&D 성과 사업화	회사는 공공/민간 고등교육기관 또는 공공 연구기관의 R&D 성과를 사업화하여 제조 활동을 수행
5. 포용성 향상	A. 비직원 대상 기회 제공(인턴십·견습 / 경력 3년 미만의 신입 졸업자 채용)	<u>인턴십 프로그램</u>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말레이시아 내 또는 해외의 공인 교육기관에서 전일제로 재학 중인 말레이시아 국적자 2) 석사, 학사, 디플로마, 전문자격증, 말레이시아 기술자격증(SKM) 레벨 1~레벨 3, 말레이시아 기술 디플로마(DKM), 고급 기술 디플로마(DLKM) 또는 TVET 프로그램 하의 동등 자격에 해당하는 과정 이수자

부록 II: NIA 스코어카드 – 제조업 부문

[가이드라인 발췌]

영역	지표	설명
5. 포용성 제고	A. 비직원 대상 기회 제공(인턴십·견습 프로그램 / 경력 3년 미만 신입 졸업자 채용)	<p><u>견습 프로그램</u></p> <p>1) 말레이시아 또는 해외의 공인 교육기관에서 전일제로 학업 중인 말레이시아 국적자</p> <p>2) 고용주는 최소 6개월에서 최대 24개월 동안 특정 기간 동안 직원을 고용하고 훈련시켜야 함</p> <p>3) Employment Act 1955(고용법 1955)에서 정의된 바에 따름</p> <p><u>신입 졸업자</u></p> <p>대학 학위, 디플로마 또는 기술자격증을 보유한 신입 졸업생, 그리고 3년 미만의 정규직 경력을 가진 졸업자</p>
	B. 최고경영진 내 여성 비중	조직의 비전 및 미션에 직접적이고 중요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의사결정 직위에 있는 여성 비율
	C. 전체 근로자 중 취약계층 근로자 비중	<p>취약계층(vulnerable groups)이란 다음을 의미함:</p> <p>a) 말레이시아 국적자이며 말레이시아 거주자</p> <p>b) 만 60세 이상의 고령자</p> <p>c) 장애인으로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자:</p> <p>i. 사회복지부에서 서면으로 장애인으로 인증된 자</p> <p>ii. 사회보장기구(SOCSSO)가 근로 가능 범위 내에서 장애인으로 인증한 자</p> <p>d) 전과자 – 법원에서 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고 형을 복역한 자</p> <p>e) 보호관찰 대상자(Parolee) – Prison Act 1995(교도소법 1995)에 따라 정의된 자</p> <p>f) 감독 대상자(Supervised person) – Prison Act 1955 제47(1)(b)(iii)항에 따라 교도관 지시에 의해 정해진 노무에 종사하는 자</p> <p>g) 전(前) 약물 의존자(Ex-drug dependant)로서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자:</p> <p>i. Drug Dependants (Treatment and Rehabilitation) Act 1983(약물 의존자 치료·재활법 1983)에 따라 치료 및 재활을 이수한 자</p> <p>ii. 다음 중 하나에 따라 감독을 받은 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약물 의존자 치료·재활법 1983 제6(1)(b)항 - Dangerous Drugs Act 1952(위험약물법 1952) 제38B(1)항 - 또는 약물 의존자 치료·재활법 1983 제3(b)항 <p>그리고 국가마약퇴치청(NAADA)의 MyAADK 시스템에 등록된 자</p>

부록 II: NIA 스코어카드 – 제조업 부문

[가이드라인 발췌]

영역	지표	설명
5. 포용성 제고	D. 전체 근로자 중 말레이시아 국적 근로자 비율	전체 근로자 수 대비 말레이시아 국적 근로자 수 참고: 말레이시아인 근로자(Malaysian workers)는 말레이시아 국적을 보유한 근로자를 의미
6. 지속 가능성 실천 강화 참고문헌: <u>MGTC 발행의 친환경 제조 실천</u>	A. 지속 가능한 소재 / 서비스	아래의 지속가능한 실천 중 하나 이상을 수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품, 포장재 및 사무용품에 재생 가능하고 지속가능한 소재를 적용 • 제품 및 포장재에 재활용 소재를 반영 • 순환경제 원칙을 적용 및 폐기물 최소화, 자원 효율성, 재사용 및 재활용을 촉진하는 제품·공정·시스템 설계 • 지속가능한 공급망 실천 이행
	B. 지속 가능한 폐기물 관리	아래의 지속가능한 실천 중 하나 이상을 수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처리, 방류 및 모니터링을 포함하는 폐수 관리 계획을 수립 • 폐기물 최소화 프로그램을 시행 • 환경 영향을 줄이기 위한 혁신적 폐기물 처리 기술에 투자
	C. 지속 가능한 물 소비	아래의 지속가능한 실천 중 하나 이상을 수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보충 또는 대체용 수자원 활용 • 물 사용량을 줄이기 위해 고효율 설비 및 공정을 설치
	D. 지속 가능한 에너지 소비	아래의 지속가능한 실천 중 하나 이상을 수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부품 선정, 절전 모드, 단열 등을 통해 에너지 사용 최소화 • 공정 잔재(폐자재, 폐열 또는 고형폐기물) 또는 부대시설(태양광, 풍력 또는 이에 준하는 설비)에서 재생에너지 활용 • 폐기물-에너지 전환(waste-to-energy) 기술을 적용 • 전력 사용량을 줄이기 위한 에너지 공급용 태양광 패널 설치

Connect with us

PwC Office

쿠알라룸푸르

Steve Chia

steve.chia.siang.hai@pwc.com

+60(3) 2173 1572

페낭&이포

Kang Gaik Hong

gaik.hong.kang@pwc.com

+60(4) 238 9225

Nur Diyana Ahmad Fauzi

nur.diyana.ahmad.fauzi@pwc.com

+60(4) 238 9230

조호바루&말라카

Benedict Francis

benedict.francis@pwc.com

+60(7) 218 6000

쿠칭

Lee Yuien Siang

yuien.siang.lee@pwc.com

+60(8) 252 7202

Keegan Ong

keegan.sk.ong@pwc.com

+60(3) 2173 1684

라부안

Jennifer Chang

jennifer.chang@pwc.com

+60(3) 2173 1828

법인세 준수 및 자문

Consumer & Industrial Product Services

Margaret Lee

margaret.lee.seet.cheng@pwc.com

+60(3) 2173 1501

Steve Chia

steve.chia.siang.hai@pwc.com

+60(3) 2173 1572

Clifford Yap

clifford.eng.hong.yap@pwc.com

+60(3) 2173 1446

Taariq Murad

taariq.murad@pwc.com

+60(3) 2173 1580

Hee Sien Yian

sien.yian.hee@pwc.com

+60(3) 2173 0222

Cynthia Ng

cynthia.hh.ng@pwc.com

+60(3) 2173 1438

Alvin Woo

alvin.jm.woo@pwc.com

+60(3) 2173 1820

Emily Yew

lock.ling.yew@pwc.com

+60(3) 2173 0363

Lim Yih Shuin

yih.shuin.lim@pwc.com

+60(3) 2173 0916

서비스 & 인프라스트럭

Lim Phaik Hoon

phaik.hoon.lim@pwc.com

+60(3) 2173 1535

신흥 시장

Fung Mei Lin

mei.lin.fung@pwc.com

+60(3) 2173 1505

Michelle Chuo

michelle.sy.chuo@pwc.com

+60(3) 2173 1289

금융서비스

Jennifer Chang

jennifer.chang@pwc.com

+60(3) 2173 1828

Lim Phaik Hoon

phaik.hoon.lim@pwc.com

+60(3) 2173 1535

Lorraine Yeoh

lorraine.yeoh@pwc.com

+60(3) 2173 1499

Tan Tien Yee

tien.yee.tan@pwc.com

+60(3) 2173 1584

에너지, 유틸리티 & 광산기술, 미디어 & 정보통신

Heather Khoo

heather.khoo@pwc.com

+60(3) 2173 1636

Lavindran Sandragasu

lavindran.sandragasu@pwc.com

+60(3) 2173 1494

Keegan Ong

keegan.sk.ong@pwc.com

+60(3) 2173 1684

Ang Wei Liang

wei.liang.ang@pwc.com

+60(3) 2173 1597

Aurobindo Ponniah

aurobindo.ponniah@pwc.com

+60(3) 2173 3771

Zarina Othman

zarina.sheikh.othman@pwc.com

+60(3) 2173 1615

Shalini Sathiveil

shalini.s.sathiveil@pwc.com

+60(3) 2173 0343

Connect with us

Specialist Services

자본투자 & 그린 인센티브

Richard Baker
richard.baker@pwc.com
+60(3) 2173 0644

중국 데스크

Lorraine Yeoh
lorraine.yeoh@pwc.com
+60(3) 2173 1499

Corporate Services

Lee Shuk Yee
shuk.yee.x.lee@pwc.com
+60(3) 2173 1626

Corporate Support Services

Mohd Haizam Abdul Aziz
mohd.haizam.abdul.aziz@pwc.com
+60(3) 2173 5355

분쟁해결

Tai Weng Hoe
weng.hoe.tai@pwc.com
+60(3) 2173 1600

Chris Tay

christopher.h.tay@pwc.com
+60(3) 2173 1143

간접세

Raja Kumaran
raja.kumaran@pwc.com
+60(3) 2173 1701

Abd Gani Othman

abdgani.othman@pwc.com
+60(3) 2173 1648

Geeta Balakrishnan

geeta.b.balakrishnan@pwc.com
+60(3) 2173 1652

Annie Thomas

annie.thomas@pwc.com
+60(3) 2173 3539

국제조세 / M&A

Gan Pei Tze
pei.tze.gan@pwc.com
+60(3) 2173 3297

Lim Chee Keong

chee.keong.lim@pwc.com
+60(3) 2173 0639

Lee Boon Siew

boon.l.lee@pwc.com
+60(3) 2173 0932

개인소득세

Michelle Chuo
michelle.sy.chuo@pwc.com
+60(3) 2173 1289

일본 비즈니스 자문

Yuichi Sugiyama
yuichi.sugiyama@pwc.com
+60(3) 2173 1191

Keegan Ong

keegan.sk.ong@pwc.com
+60(3) 2173 1684

한국 데스크

Keegan Ong
Keegan.sk.ong@pwc.com
+60(3) 2173 1684

HanHee Son, 손한희

Hanhee.s.son@pwc.com
+60(3) 2173 0625

신규 법안

Anushia Soosaipillai
anushia.joan.soosaipillai@pwc.com
+60(3) 2173 1419

국제통상

Chandrasegaran Perumal
chandrasegaran.perumal@pwc.com
+60(3) 2173 3724

세무 신고 & 전략

Lavindran Sandragasu
lavindran.sandragasu@pwc.com
+60(3) 2173 1494

Pauline Lum

pauline.ml.lum@pwc.com
+60(3) 2173 1059

Mohd Haizam Abdul Aziz

mohd.haizam.abdul.aziz@pwc.com
+60(3) 2173 5355

세무 테크놀로지

Yap Sau Shiung
sau.shiung.yap@pwc.com
+60(3) 2173 1555

Joey Chong

joey.chong@pwc.com
+60(3) 2173 0092

고용관련 세금

Kartina Abdul Latif
kartina.a.latif@pwc.com
+60(3) 2173 0153

Mohammad Iesa Morshidi

iesam.morshidi@pwc.com
+60(3) 2173 3136

이전가격

Anushia Soosaipillai
anushia.joan.soosaipillai@pwc.com
+60(3) 2173 1419

Jagdev Singh

jagdev.singh@pwc.com
+60(3) 2173 1469

Desmond Goh

desmond.goh.keng.hong@pwc.com
+60(3) 2173 1439

Lim Ying Tian

ying.tian.lim@pwc.com
+60(3) 2173 0291

Ong Ai Ling

ai.ling.ong@pwc.com
+60(3) 2173 0711

Lilia Edlina Azmi

lilia.edlina.azmi@pwc.com
+60(3) 2173 1498

Dave Law

dave.l.law@pwc.com
+60(3) 2173 0614



www.pwc.com/my/tax

Tax in Motion 은 PricewaterhouseCoopers Taxation Services Sdn Bhd에서 발행하는 뉴스레터입니다. 이 뉴스레터 작성에 있어 모든 주의를 기울였으나, 정보의 정확성, 적합성, 신뢰성 또는 완전성에 대해 어떠한 진술이나 보증(명시적 또는 묵시적 포함)을 하지 않습니다.

PricewaterhouseCoopers Taxation Services Sdn Bhd와 그 직원 및 대리인은 본 출판물에 포함된 정보나 그에 근거한 어떤 결정에 대해 행동하거나 행동하지 않는 누구의 결과에 대해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으며, 책임도 부인합니다. 수령자는 자신의 상황, 요구사항 또는 필요에 맞춘 구체적인 전문가 조언을 구하지 않고 행동해서는 안 됩니다.

© 2026 PricewaterhouseCoopers Taxation Services Sdn Bhd. All rights reserved.
"PricewaterhouseCoopers" and/or "PwC" refers to the individual members of the PricewaterhouseCoopers organisation in Malaysia, each of which is a separate and independent legal entity. Please see www.pwc.com/structure for further details.